

제조물책임제도

서태병*

I. 제조물책임(PL)의 개요

1. 정의

PL(Product Liability : 제조물 또는 생산물책임)은 미국에서 발전한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결합제품, 즉 안전성이 결여된 위험한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품공급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품의 수출이나 판매후 흔히 발생하는 「제품클레임」과 「PL」의 차이는, 제품클레임은 제품의 품질이 불량인 경우 제조자가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을 실시하는 제조자의 기본적인 의무(법률상 하자담보책임)임에 반해, PL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 책임에서부터 정신적 피해에 이르기까지 제품공급자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한차원 상위의 배상책임이라는 데 있다.

PL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품결함은 나라별로 해석을 달리 하나, 일반적으로 제품을 통상 예견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소비함에 있어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부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2. PL의 법리

PL법리는 60년대 이후 생산자 보호입장에서 소비자 보호경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가 제조자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입한

수공업시대에는 소비자가 PL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과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60년대부터는 제품의 결함만 입증하면 제조자의 과실에 상관없이 책임을 부과하는 엄격책임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엄격책임의 과대적용으로 미국내 기업들은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엄격책임」을 적용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제품으로 인한 피해이면 결합의 유무에 상관없이 배상을 하는 「절대책임」에 가까운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이에 대한 폐단이 심각한 실정이다.

3. 기업에 미치는 영향

미국과 일본에서는 PL사고가 제조원가 부담, 인력자원 낭비, 신제품 개발지연 및 기업이미지 실추 등을 유발해 기업경영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먼저 제조원가 부담측면에서 보면, PL이 법제화되면 기업의 제품안전에 대한 책임이 엄격화되고 이에 따라 제품안전비용과 PL보험료가 새로운 원가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수익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며, 인력자원의 낭비측면에서 보면, PL과 관련되는 소송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장기화되는 추세이므로 소송의 승패에 관계없이 소송대비과정에서 엄청난 인력자원의 낭비와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이며, 엄격책임이 적용되면 제품의 안

* 通商產業部 流通產業課 行政事務官

전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이에 따라 제품 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활동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신제품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 한편 PL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에 대한 대응이 소홀할 경우 배상비용으로 인한 기업이윤의 손실보다는 기업이미지가 크게 실추됨으로 인한 손실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II. 주요국의 PL현황과 추세

1. 미국

미국은 1960년대 이후 이 제도를 판례법으로 확립하였으며, PL사고와 관련하여 배상금액의 고액화, 소송건수의 증가 및 피고(제조사)의 패소율 증가로 보험회사가 PL보험의 인수를 거부해 기업이 도산하거나 신제품개발을 포기하는 등의 「PL위기」가 70년대와 80년대 중반에 잇따라 발생하였다.

미국이 PL위기에까지 가게 된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배심원제도, 엄격책임주의, 징벌적 배상제도, 변호사 보수의 성공보수제, 제소비용 저렴 등 법적측면뿐만 아니라 미국만이 갖는 법적 환경인 소송사회, 서민보호 우선, 과다한 변호사 등도 주요원인이 된다.

2. EU

EU에서는 1987년 EU각료이사회에서 통일 PL법(EU 지침)이 정식으로 채택되어 가맹 12개국은 이후 3년 이내에 EU지침에 근거하여 국내법을 정비하고 시행토록 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PL입법화를 완료하고 시행중이다.

3. 일본

일본에서 제조물책임의 입법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는 20여년전인 1975년부터 이

루어졌다. 1975년 4월에 일본의 국민생활심의회 소비자보호부회에 설치된 소비자구제특별위원회가 제조물책임의 무과실책임화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전을 보이지 못했으며, 1985년에 이르러 EC지침이 공표되고 EC 각 회원국이 국내입법을 추진하게 되자, 일본에서는 다시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사회단체·정당 등에서 다양한 법안이 제안되었다.

1993년말에는 경제기획청 국민생활심의회 소비자정책부회에서 제조물책임제도의 소비자피해 방지·구제기능 및 그 내용·역할에 관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1994년 정부(안)으로 중의원에 제출, 통과되어 1995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4. 한국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결합제품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이론(계약책임, 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책임)에 의존하여 배상하고 있으며, 주로 불법행위법(제 750조)상의 과실책임에 의해 제조사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길어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소비자의 권익보호 요구가 갈수록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피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엄격책임을 근거로 한 PL법 도입을 소비자보호원에서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1994년 6월에는 입법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도 있다.

우리나라 제조물에 의한 피해구제제도를 살펴보면, 현재 제조물책임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상품 등의 사용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법령이나 기관 등에 여러 종류의 피해구제절차가 있다.

피해구제 관련법에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소비자보호법이 1980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에 의한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설립과 보호원에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일정사업자의 피해보상기구 설치, 피해보상규정 등을 명문화해 놓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공산품품질관리기준법 등의 개별법률에서도 피해구제 관련조항을 두고 있으며, 사회구제와 관련된 법에는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등이 있다.

피해구제 관련기관 및 제도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군·구청에 소비자 고발 창구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소비자피해구제단체로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있으며, 동원내의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III. 제조물책임법의 필요성과 방향

결합제조물에 관한 법제는 국제적 조류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결합상품에 대한 피해가 심각할뿐만 아니라 현행의 민사법제도로서는 결합제조물에 의한 피해의 구제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조물책임법의 필요성이 소비자단체 등 각계에서 대두되고 있다.

1. 입법의 기본방향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은 특별법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며, 제조물책임법의 책임원칙은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전체적인 골격은 EU지침을 중심으로 입법화되되 다른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입법시 주요 고려사항

법적용대상 제조물의 범위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과 부동산중 대량 공급된 주택으로 하여야 하며, 제조물책임에서 결합이란 일반인이 그 제조물에서 일반적으로 기

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정의하여야 하며,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는 완성품의 제조사, 원재료·부품의 제조사, 자신을 제조사로 표시한 자 및 판매, 대여를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한 자로 하되, 제품의 제조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된다.

한편 제조사에게 일정한 면책사유를 인정하여 제조사가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제조사의 사전면책이나 책임제한을 정하는 특약은 금지도록 하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10년)를 두어야 한다.

IV. 결 어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은 소비자보호원 등에서 건의한 바 있으며, 동 제도의 도입은 제조업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제조업체의 경우 기업의 규모, 기술수준 등의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할 때 동법이 입법화될 경우 규모가 작고 기술수준이 낮은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으며, 일부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의 도입, 보증기간의 연장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는바, 앞으로 제조업체 자체적으로도 소비자보호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상품의 안전에 관련된 기준, 품질기준, 피해보상관련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결론으로 제조물책임법은 우리와 발전단계나 문화가 다른 선진국 등지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으로서 동법의 입법화에 있어 우리나라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의 수준, 소비문화, 현행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고찰하고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으로 인한 효과를 깊이 검토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와 산업발전의 조화를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요구되어진다.